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20년 원천세 직무 교육

국세청 원천세과

순 서 Contents

Ⅰ. 원천징수 개요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Ⅲ. 지급명세서 제출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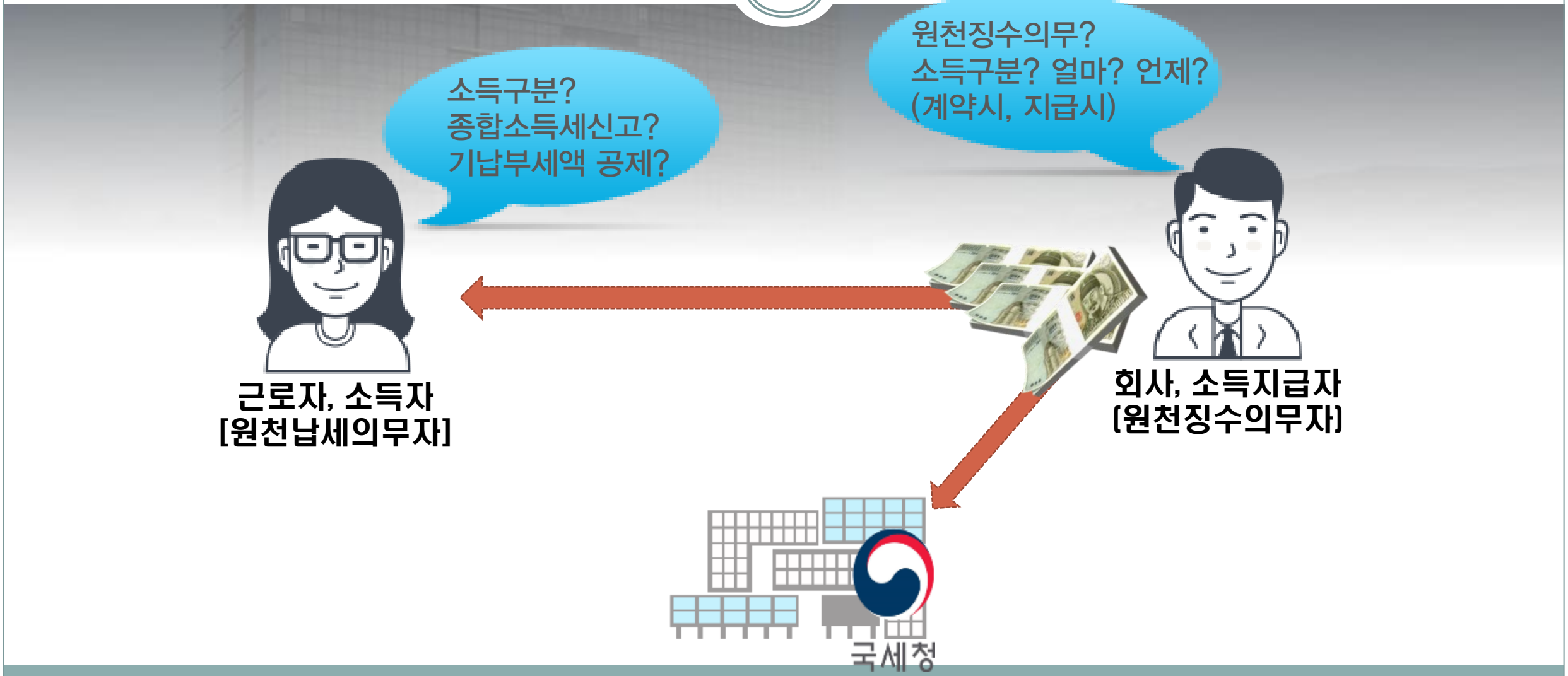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원천세과

National Tax Service

Ⅰ. 원천징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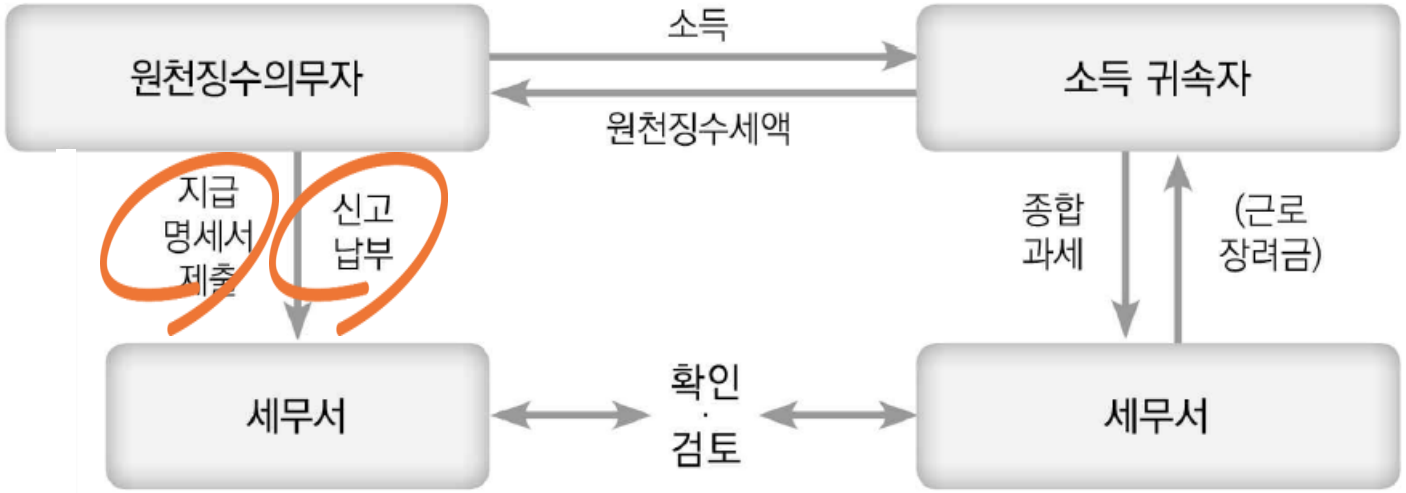
Ⅰ. 원천징수 개요


소득구분?
종합소득세신고?
기납부세액 공제?
원천징수의무?
소득구분? 얼마? 언제?
(계약시, 지급시)
근로자, 소득자
[원천납세의무자]
회사, 소득지급자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Ⅰ. 원천징수 개요

1.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



Ⅰ. 원천징수 개요

2. 원천징수 일정표



Ⅰ. 원천징수 개요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사인간 금전거래



경품 당첨



뇌물

Ⅰ. 원천징수 개요

4. 불이행 시 제재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징수

참고

조세범처벌법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Ⅰ. 원천징수 개요

5. 원천징수 대상 소득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포함), 퇴직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 사업,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토지건물의 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 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 사업, 인적용역, 근로, 퇴직, 연금, 토지건물의 양도,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	

Ⅰ. 원천징수 개요

6.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x 20%
-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 세액의 10%

7. 원천징수 세율

과세표준			구분
개인	근로	매월 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연말정산)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기타	기타소득금액	20%

Ⅰ. 원천징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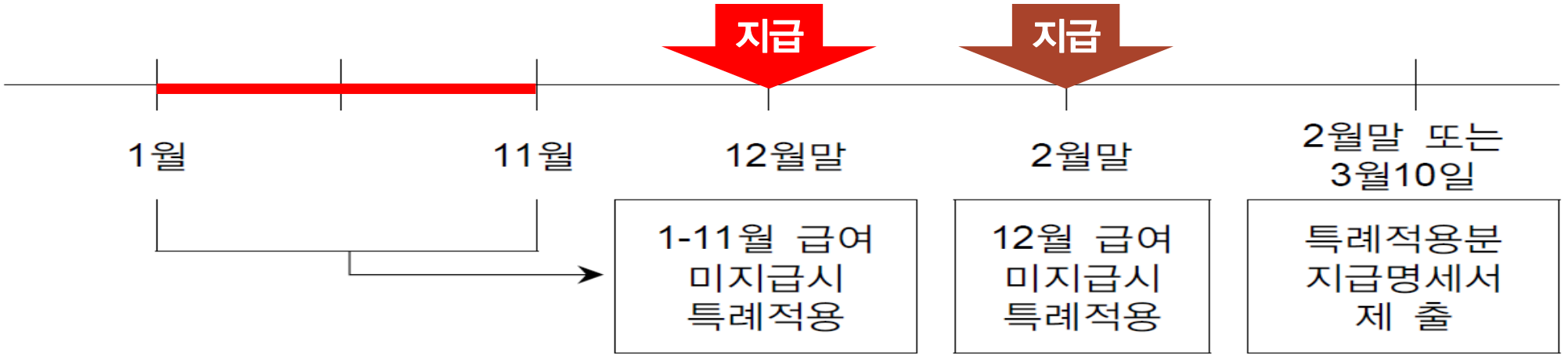
8. 원천징수 제외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 납부한 경우(소법§ 85③)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Ⅰ. 원천징수 개요

9.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Ⅰ. 원천징수 개요

사례) 회사의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19년 10월~12월 급여를 연말정산할 때 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1. 19년 10월분, 11월분 → 20년 1월10일 원천세 신고 · 납부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10월
							③지급연월	2019년 1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①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11월
							③지급연월	2019년 1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Ⅰ. 원천징수 개요

사례) 회사의 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19년 10월~12월 급여를 연말정산할 때 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2. 19년 12월분 → 20년 3월10일 원천세 신고 · 납부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19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소득	간 이 세 액	A01	10	15,000,000	500,000					

10.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근로 · 퇴직소득

대 상		교 부 시 기
근로소득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중도 퇴직자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 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Ⅰ. 원천징수 개요

11.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의 계산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때 원천징수납부불이행가산세 부담함

· ① 미납세액 X 3% + ② 과소 · 무납부세액 X 2.5/10,000 X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단 납세고지일부터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한도) 미납세액 X 50%*

* 단, ①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X → 가산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X + 납부 ○ → 가산세 X

Ⅰ. 원천징수 개요

11.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사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가산세부담 ○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부담 X

12.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사례] ’20.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20년 5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

구분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연월
4월 급여	매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6.10.
5월 급여	매월	2020년 5월	2020년 5월	2020.6.10.

Ⅰ. 원천징수 개요

12.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오류유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

→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계속 근로자분과 함께 제출

○ 계약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일반근로자와 함께 제출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누락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 · 제출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세 신고 · 납부 절차

○ 원천세 신고 · 납부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 신고 · 납부 방법

-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 납부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함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월별 신고서 작성 방법]

「① 신고구분」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에, 수정 신고서는 “수정” 에 표시를 함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 소득발생 연월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을 각각 기재
- 20년 2월분 소득을 20년 3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2020년 2월, 지급연월: 2020년 3월
- 20년 2월분 소득을 20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 귀속연월: 2020년 2월, 지급연월: 2020년 2월

「④ 인원」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수를 기재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월별 신고서 작성 방법]

「⑤ 총지급액」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⑥ 소득세 등」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및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
- 농어촌특별세

구 분	과 세 표 준	농특세
이자 · 배당소득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	과세표준 x 10%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x 20%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월별 신고서 작성 예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6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7월
원천징수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①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에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 “매월” 및 “연말” 2곳 모두 “○” 표시
✓환급신청 하려는 경우 “환급신청” 에 “○” 표시
✓지점법인 · 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에 “○” 표시 할 수 없음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월별 신고서 작성 예시]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0년 5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2020년 6월
원천징수의 무 자		법인명(상호)	○○○		대표자(성명)	△△△		일괄납부 여부	여,(부)
								사업자단위 과세 여부	여,(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xxx-xx-xxxxx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xxx-xxx-xxxx
								전자우편주소	00@00.00

②귀속연월
③지급연월

✓5월 급여, 6월 급여를 6월말에 지급한 경우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반기별 납부자는 “귀속연월”에 **반기 개시월**, “지급연월”에 **반기 종료월**을 기재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00,00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 · 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④ 인원	소득지급 ⑤ 총지급액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가감계		A40	1	30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3	295,900,000

④인 원
⑤총지급액

- ✓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
- ✓ 퇴직 · 기타 ·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기재 → 금융기관만 해당
-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금액은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기재

법조문	주요비과세 항목	포함여부
소법 §12 3호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X
소법 §12 3호 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법 §12 3호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X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X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
소법 §12 3호 거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법 §12 3호 너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
소법 §12 3호 러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X
	현물급식	X
소법 §12 3호 머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⑥ ~ ⑧

✓ 총합계 A99행의 ⑥ ~ ⑧란에 소득별 가감계(A10, A20, A30 · · ·)를 합산기재

✓ "△" 표시된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550,000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550,000	550,000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④ 인원	원천징수명세				납부 세액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20	156,000,000	△55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1	138,000,000	6,600,000			550,000	6,050,000	
		가감계	A20	1	138,000,000	6,600,00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300,000	24,000				24,000	
		가감계	A40	1	300,000	24,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1	1,600,000	400,000				400,00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부표작성

✓ 이자소득(A50) · 배당소득(A60) · 법인원천(A80) · 저축해지추징세액(A69)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

✓ (21)환급신청세액 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및 “기납부 세액 명세서” 작성

※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2.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⑮ 일반환급	(16)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17)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550,000			

(18) 조정대상 환급세액 [14+15+16+17]	(19)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20) 차월이월 환급세액 [18-19]	(21) 환급 신청액
550,000	550,000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 원천징수세액 선택

-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가능

  -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변경된 비율 적용)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3.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 분납대상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 분납방법

- 근로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을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다만, 분납 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을 원천징수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분납관련 신고서 작성 사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 부			비 고
	① 총 지급액	② 소득세	③ 3월10일	④ 4월10일	⑤ 5월10일	
합 계	330,000,000	△200,000	△800,000	300,000	300,000	
김○○	100,000,000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분납신청 O
이○○	80,000,000	△600,000	△600,000			
박○○	70,0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 O
최○○	50,000,000	△300,000	△300,000			
정○○	30,000,000	△200,000	△200,000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 원	총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⑥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분납관련 신고서 작성 사례]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⑥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①	②					
	연말정산 합계	A04	5	330,000,000	△200,000					
	연말정산 분납금액	A05	2		600,000	④+⑤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800,000	③				
	가 감 계	A10	10	410,000,000	△200,000	③+⑥				

2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연말정산 결과
(4월+5월) 분납신청 세액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분납관련 신고서 작성 사례]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 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④				
	가 감 계		A10	5	50,000,000	800,000	A01(500,000) +A06(300,000)				

3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4월 분납 납부금액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분납관련 신고서 작성 사례]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300,000					
	연말정산 분납금액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300,000	⑤				
	가 감 계	A10	5	40,000,000	700,000	A01(400,000) +A06(300,000)				

4월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4월 분납 납부금액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 조정환급

○ 개념

- 원천징수 세액 중 다른 세목간에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환급할 세액과 상계하여 차감 후 세액을 납부

○ 조정환급 사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100만원이고, 기타소득세 1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세 △100만원으로 기타소득세 10만원을 조정환급하고 남은 근로소득세 90만원에 대하여 차월이월환급세액(이후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세액에 기재함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조정환급]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100만원

기타소득세 10만원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0	12,000,000	45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합계	A04	10	144,000,000	△1,450,000					
		연말정산 분납신청	A05								
		연말정산 납부금액	A06			△1,450,000					
		가감계	A10	20	156,000,000	△1,000,00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1	500,000	100,000			100,000		
		가감계	A40	1	500,000	100,000			100,000		
총합계			A99	21	156,500,000	**100,000**			100,000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 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 세액	⑬ 기환급 신청 세액	⑭ 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⑰ 그밖의 환급세액 합병 등				
			1,000,000				1,000,000	100,000	900,000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5.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

○ 경정 등의 청구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정하거나 거부통지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 신고서 작성 예시]

'20.8월분 급여로 2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1명,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20.11.10.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3,000,000	58,730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 금액	A06								
		가감계		A10	1	3,000,000	58,730				58,73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3,000,000	58,730				58,730	

(사례) 직원1명 200만원

'20.8월분 원천징수누락

수정 신고서

✓당초신고 → 상단 **적색**
수정내용 → 하단 **흑색**
✓수정분지급명세서제출

① 신고구분: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처분 / 환급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8월
③ 지급연월	2020년 8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가감계	A10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 2	*3,000,000* 5,000,000	*58,730* 108,730		2,260		*58,730* 110,990	

매월 신고서

✓당월에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추가 납부 · 환급세액을 집계하여 매월신고서 "수정신고세액(A90)" 란에 기재하여 납부

① 신고구분: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처분 / 환급신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20년 10월
③ 지급연월	2020년 10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2	6,000,000	117,460					
		가감계	A10	2	6,000,000	117,460				117,460	
수정신고(세액)			A90			50,000		2,260		52,260	
총합계			A99	2	6,000,000	167,460		2,260		169,720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8	22,230,000 22,230,000	1,198,170 1,198,170					
		연말정산	합계	A04	8 8	323,231,250 323,231,250	△3,901,030 △3,701,030		18,600			
			납부 금액	A06			△3,901,030 △3,701,030		18,600			
		가감계		A10	16 16	345,461,250 345,461,250	△2,702,860 △2,502,860		18,600		218,60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16 16	345,461,250 345,461,250			18,600		218,600	

(사례) 직원1명 18귀속 연말 정산 시 과다공제 200,000원

수정 신고서

✓당초신고 → 상단 **적색**
수정내용 → 하단 **흑색**
✓수정분지급명세서제출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2019년 9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2019년 9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8	25,000,000	1,200,000					
		가감계	A10	8	25,000,000	1,200,000				1,200,000	
수정신고(세액)			A90			200,000		18,600		218,600	
총합계			A99	8	25,000,000	1,400,000		18,600		1,418,600	

매월 신고서

✓당월에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추가 납부 · 환급세액을 집계하여 매월신고서 “수정신고세액(A90)” 란에 기재하여 납부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6.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구 분		내 용
신청 요건	종업원수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 요건 없음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 사업자
신청기간		6.1.~ 6.30. → 승인시, 7월~12월 지급분을 다음연도 1.10.까지신고 12.1.~12.31. → 승인시, 1월~6월 지급분을 다음연도 7.10.까지 신고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서 작성 방법]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 인원 작성방법	⑤ 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	6개월간 지급한 **총 지급액을 합산**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	

「⑥ 소득세 등」 징수세액 기재

- 간이세액표에 따른 6개월간의 징수세액 합계액 기재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신고서 작성 방법]

- 반기 근로소득 지급 : 5명, 총지급액 30백만원, 소득세 900,000원
- 반기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1명, 총지급액 10백만원, 소득세 △ 100,000원
-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 12명, 총지급액 6백만원, 소득세 0원
- 반기 기타소득 지급 : 2명, 총지급액 1백만원, 소득세 40,000원

<table>
<tr><td colspan="2">① 신고구분
매월 / (반기) / 수정 / 연말 / 소득처분 / 환급신청</td><td colspan="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td><td>②귀속연월</td><td>2020년 1월</td></tr>
<tr><td colspan="5"></td><td>③지급연월</td><td>2020년 6월</td></tr>
<tr><td rowspan="2">원천징수
의 무 자</td><td>법인명(상호)</td><td>○○○</td><td>대표자(성명)</td><td>△△△</td><td>일괄납부 여부</td><td>여, (부)</td></tr>
<tr><td>사업자(주민)
등록번호</td><td>xxx-xx-xxxxx</td><td>사업장 소재지</td><td>○○○○○</td><td>사업자단위
과세 여부</td><td>여, (부)</td></tr>
<tr><td colspan="5"></td><td>전화번호</td><td>xxx-xxx-xxxx</td></tr>
<tr><td colspan="5"></td><td>전자우편주소</td><td>00@00.00</td></tr>
</table>

(이하 다음 페이지에 연결)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30,000,000	900,000					
		중도퇴사		A02	1	10,000,000	△100,000					
		일용근로		A03	12	6,000,000	0					
		연말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18	46,000,000	800,000				800,00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2	1,000,000	40,000					
		가감계		A40	2	1,000,000	40,000				40,00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 정 신 고(세액)				A90								
총합계				A99	20	47,000,000	840,000				840,000	

④인 원
⑤총지급액

- ✓ 간이세액(A01)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과 총지급액
- ✓ 중도퇴사(A02) 반기 중도퇴사 총인원과 총지급액
- ✓ 일용근로(A03) 월별 인원의 6월 합계인원과 총지급액
- ✓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퇴직소득(A20)…..
  :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과 총지급액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7.홈택스 신고 방법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제출 및 출력

- 유의사항

  : 동일한 귀속연월, 지급연월의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Hometax. 국세청홈택스
통합검색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영세납세자 지원단
환급금 조회
사업자등록 신청
MyNTS
설정
해외탈세 제보(해외소득 탈루, 해외재산 은닉 등) 접수
추징세액에 따라 최고 40억원 포상금 지급!
해외탈세제보 이용 문의는 국번없이 126(4번) 평일 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상담·제보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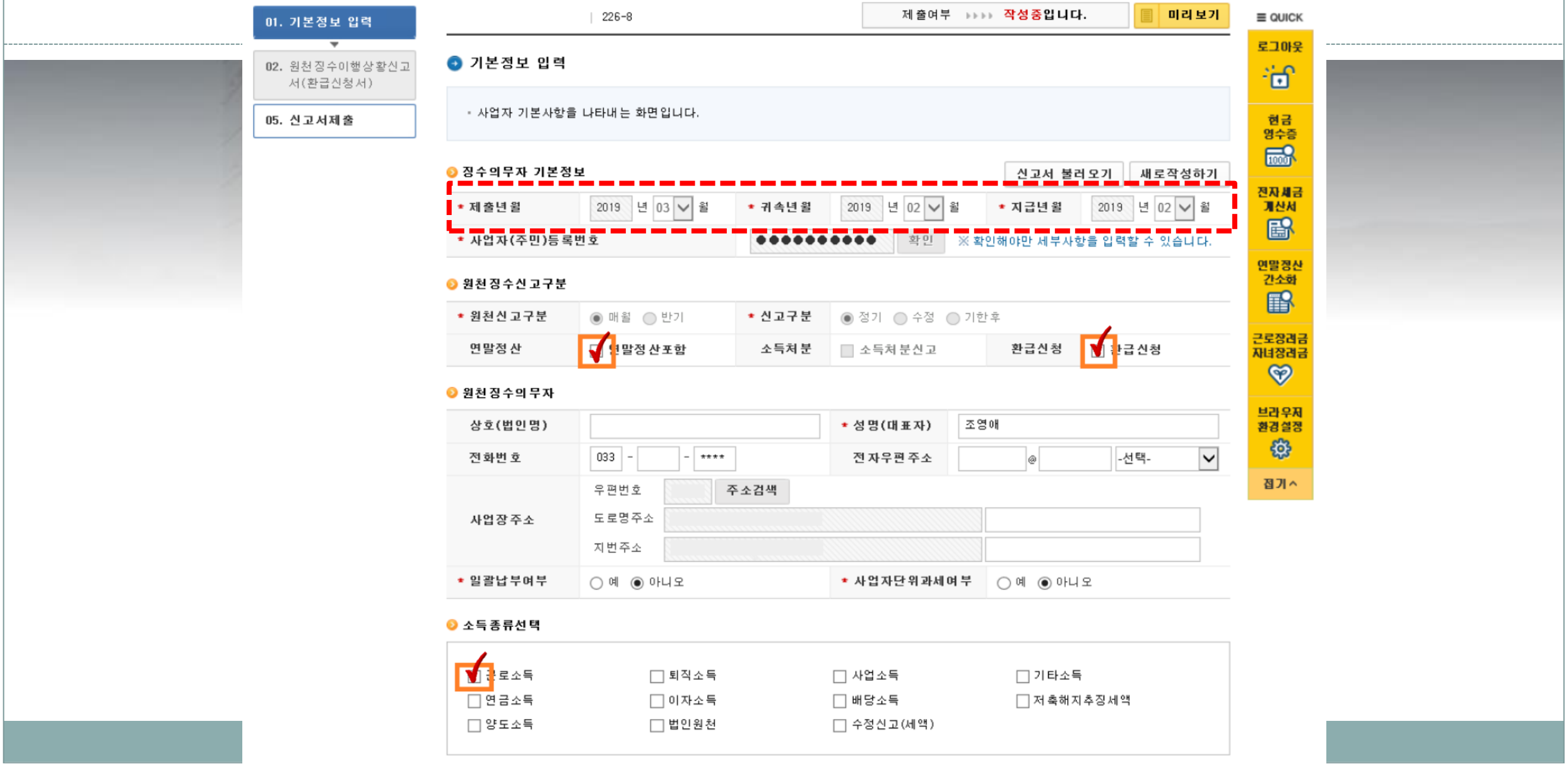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신고/납부
4 납세증명서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 인지세 전자문서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신고부속서류제출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365일 07:00 ~ 23:30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02 세금신고 진행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생성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증(형식 · 내용검증) 후 제출
접수증 확인 · 출력
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신고내역]에서 접수증 확인 · 출력
세금 납부 이용절차
01 세금납부 대상선택
02 세금납부 진행
03 세금납부 확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국가별보고서 관련자료 제출
≡ QUICK
로그아웃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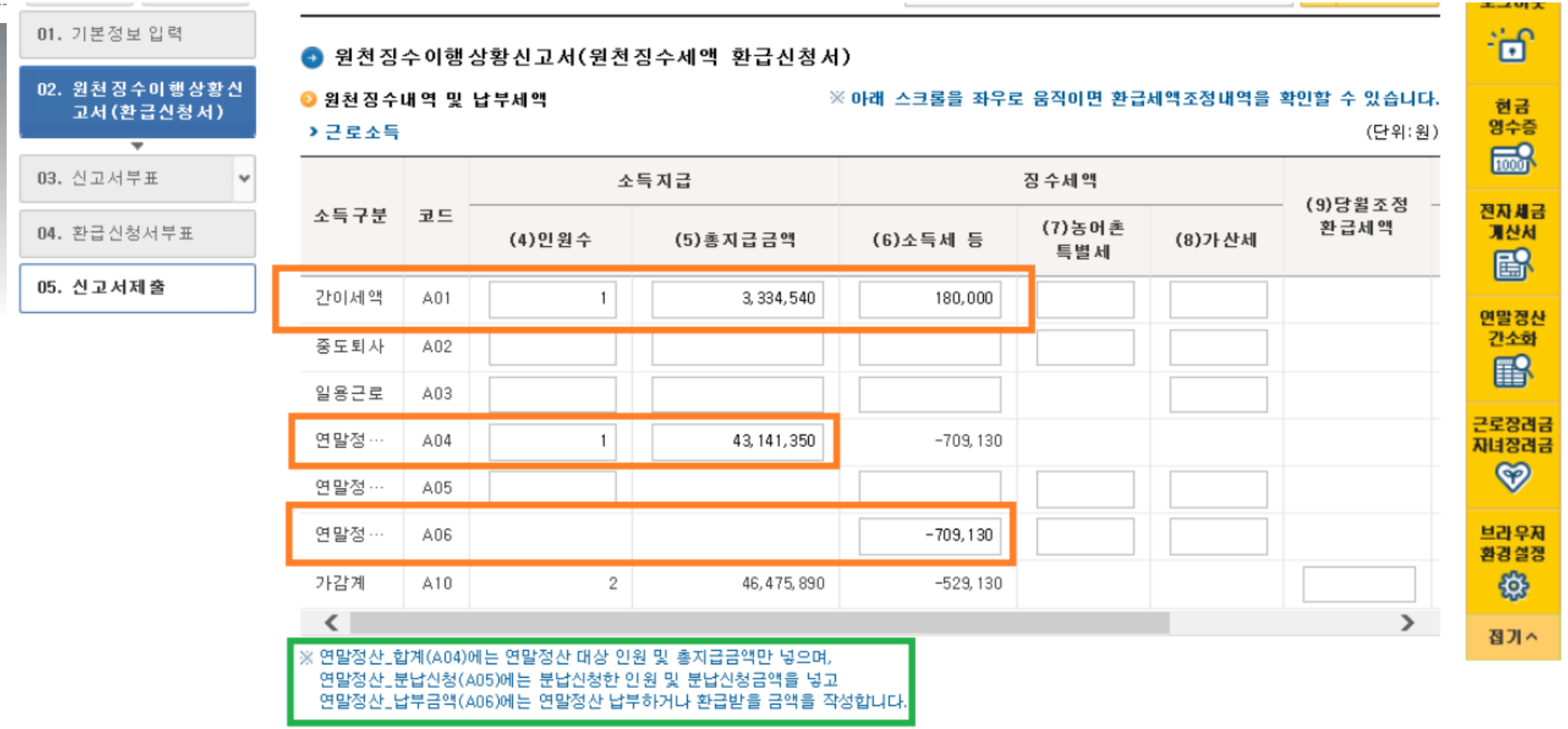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4 납세증명서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24:00)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Step 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은 [Step 2.신고내역]의 납부서( )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이용안내 도움말
QUICK
로그아웃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정기신고 방법
- 매월 신고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반기 신고납부기한 : 1~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12월지급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정기신고 때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계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5. 신고서제출
226-8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QUICK
로그아웃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기본사항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정수의무자 기본정보
신고서 불러오기
새로작성하기
제출년월 2019 년 03 월
귀속년월 2019 년 02 월
지급년월 2019 년 02 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구분
원천신고구분 매월 반기
신고구분 정기 수정 기한후
연말정산 연말정산포함
소득처분 소득처분신고
환급신청 환급신청
원천징수의무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조영애
전화번호 033 - - ****
전자우편주소 @ -선택-
사업장주소
우편번호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일괄납부여부 예 아니오
사업자단위과세여부 예 아니오
소득종류선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양도소득
법인원천
수정신고(세액)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아래 스크롤을 좌우로 움직이면 환급세액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단위:원)
소득구분 | 코드 | 소득지급 (4)인원수 (5)총지급금액 | 징수세액 (6)소득세 등 (7)농어촌특별세 (8)가산세 | (9)당월조정환급세액
간이세액 A01 1 3,334,540 18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 A04 1 43,141,350 -709,130
연말정… A05
연말정… A06 -709,130
가감계 A10 2 46,475,890 -529,130
※ 연말정산_합계(A04)에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 및 총지급금액만 넣으며,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는 분납신청한 인원 및 분납신청금액을 넣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는 연말정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작성합니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총 합계 (단위: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4)인원수	소득지급 (5)총지급금액	징수세액 (6)소득세 등	징수세액 (7)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 (8)가산세	(9)당월조정환급세액
총합계	A99	2	46,475,890				

환급세액 조정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12)전월미환급세액	(13)기환급 신청세액	(14)차감잔액(12-13)
0 원	0 원	0 원

› 당월 발생 환급 세액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

(15)일반환급	(16)신탁재산(금융회사 등)	(17)그 밖의 환급세액
529,130 원	0 원	금융회사 등 : 0 원
		합 병 등 : 0 원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명세서 작성하려면, '차월이월 승계명세서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환급조정 및 신청세액

(18)조정대상환급세액(14+15+16+17)	(19)당월 조정환급 세액 합계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529,130 원	0 원	529,130 원

※ 환급신청하려면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환급신청구분"에 체크 후 환급신청서부표를 작성합니다.

(21)환급신청액	529,130 원

이전 | 저장 후 다음이동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브라우저 환경설정 |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

Step 1. 세금신고 | Step 2. 신고내역 | Step 3. 삭제내역

메뉴펼침 | 메뉴접기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 미리보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529,13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추가입력 | 선택내용 삭제

□	소득의종류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소득 지급액	①결정 세액	②계
□	근로소득	2019-02	2019-02	A04	1	43,141,350	1,400,861	
	합 계				1	43,141,350	1,400,861	

※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하단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원절사는 ③차감세액 값을 통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⑤조정환급세액은 환급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에 입력된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전월 미환급세액	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529,130 원

※ 위의 (12)전월 미환급세액 및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QUICK
로그아웃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01. 기본정보 입력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환급신청 내역 입력
(21)환급신청액
529,130
원
※ 위의 환급신청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의 (21)환급신청액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①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②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③차감세액
④분납금액
⑤조정환급세액
⑥환급신청액
1,4
2,110,000
2,110,000
-709,130
180,000
529,130
1,400,8
2,110,000
2,110,000
0
-709,130
180,000
529,130
※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하단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원절사는 ③차감세액 값을 통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⑤조정환급세액은 환급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에 입력된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전월 미환급세액
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529,130
원
※ 위의 (12)전월 미환급세액 및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 (12)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하단의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03. 신고서부표

04. 환급신청서부표

05. 신고서제출

▪ 환급 신청시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①소득세등
☐	근로소득	2018-01	2018-01	A01	1	2,762,000	100,000
☐	근로소득	2018-02	2018-02	A01	1	4,785,920	370,000
☐	근로소득	2018-03	2018-03	A01	1	3,152,720	110,000
☐	근로소득	2018-04	2018-04	A01	1	3,228,720	120,000
☐	근로소득	2018-05	2018-05	A01	1	3,239,630	120,000
☐	근로소득	2018-06	2018-06	A01	1	3,239,630	120,000
☐	근로소득	2018-07	2018-07	A01	1	3,322,630	130,000
☐	근로소득	2018-08	2018-08	A01	1	3,334,540	140,000
☐	근로소득	2018-09	2018-09	A01	1	5,063,140	380,000
☐	근로소득	2018-10	2018-10	A01	1	3,929,800	210,000
☐	근로소득	2018-11	2018-11	A01	1	3,334,540	130,000
☐	근로소득	2018-12	2018-12	A01	2	3,748,080	180,000
	합 계				13	43,141,350	2,110,000

※ 환급신청 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A01, A20 등)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납부한 코드만)
예) A01:납부, A02:환급 인 경우 A01만 입력

≡ QUICK

로그아웃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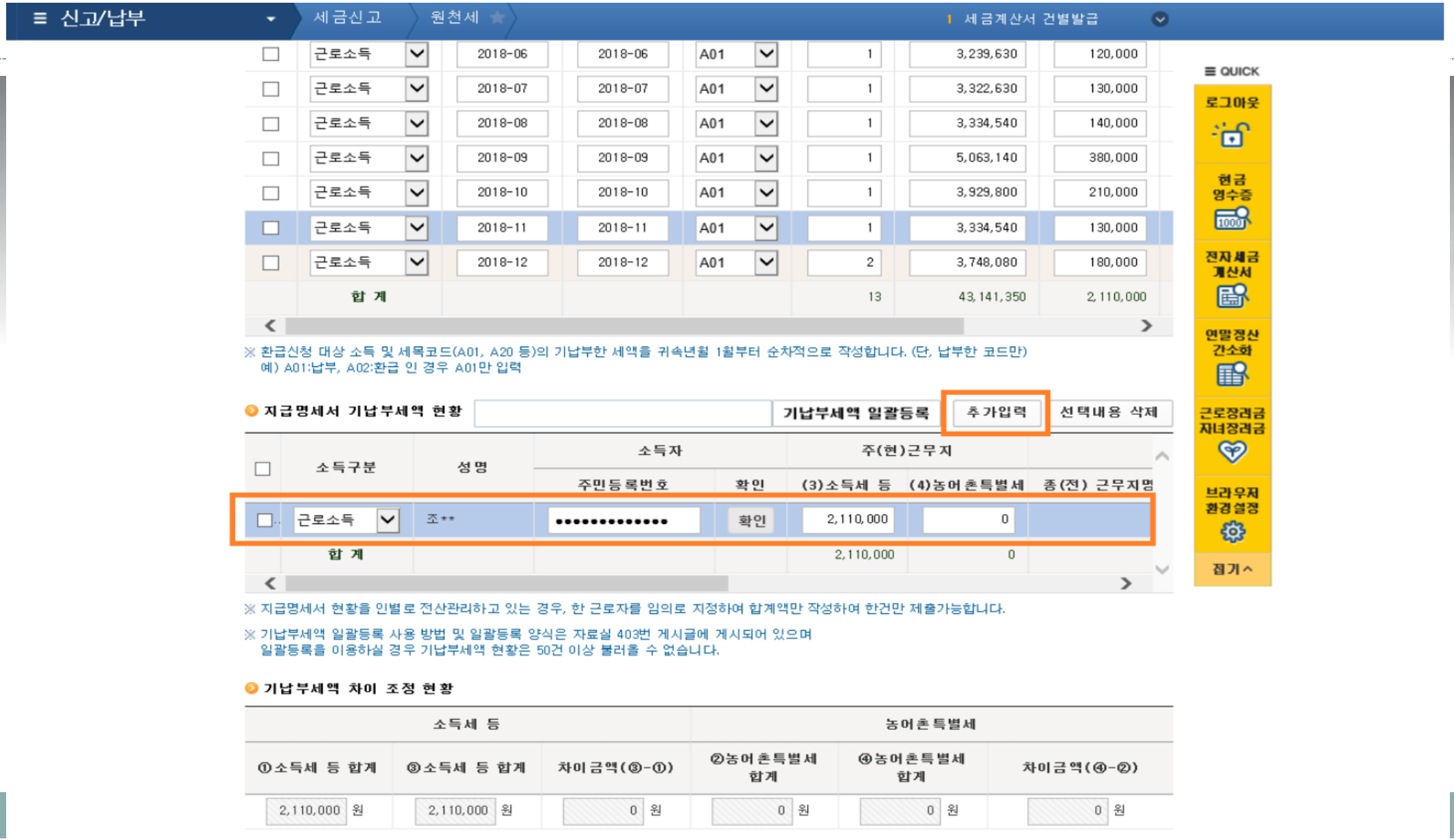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1 세금계산서 건별발급
≡ QUICK
로그아웃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근로소득 2018-06 2018-06 A01 1 3,239,630 120,000
근로소득 2018-07 2018-07 A01 1 3,322,630 130,000
근로소득 2018-08 2018-08 A01 1 3,334,540 140,000
근로소득 2018-09 2018-09 A01 1 5,063,140 380,000
근로소득 2018-10 2018-10 A01 1 3,929,800 210,000
근로소득 2018-11 2018-11 A01 1 3,334,540 130,000
근로소득 2018-12 2018-12 A01 2 3,748,080 180,000
합 계 13 43,141,350 2,110,000
※ 환급신청 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A01, A20 등)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납부한 코드만)
예) A01:납부, A02:환급 인 경우 A01만 입력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기납부세액 일괄등록
추가입력
선택내용 삭제
소득구분 성명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주(현)근무지 (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종(전) 근무지명
근로소득 조** 확인 2,110,000 0
합 계 2,110,000 0
※ 지급명세서 현황을 인별로 전산관리하고 있는 경우, 한 근로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합계액만 작성하여 한건만 제출가능합니다.
※ 기납부세액 일괄등록 사용 방법 및 일괄등록 양식은 자료실 403번 게시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일괄등록을 이용하실 경우 기납부세액 현황은 50건 이상 불러올 수 없습니다.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①소득세 등 합계 ③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③-①) ②농어촌특별세 합계 ④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④-②)
2,110,000 원 2,110,00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①소득세 등 합계	③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③-①)	②농어촌특별세 합계	④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④-②)
2,110,000 원	2,110,00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사유선택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포함 ☐ 전입자 ☐ 전출자 ☐ 합병분할 ☐ 기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며,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여 아래 사유내용을 최대 한글 750자(1500bytes)까지 입력이가능합니다.
사유내용	0 / 1500 bytes ※특수문자 %*#@등 입력불가 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 납부현황의 ①소득세등의 합계와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③주(현)근무지 소득세 등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 입력완료

전자세금 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기납부세액 [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하단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시, 원절사는 ③차감세액 값을 통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⑤조정환급세액은 환급세액에서 자동적으로 차가감되는 같은 세목의 납부금액과 타 세목에 입력된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전월 미환급세액	0 원
(20)차월이월 환급세액(18-19)	529,130 원

※ 위의 (12)전월 미환급세액 및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 (12)전월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하단의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환급계좌신고

은행	농협은행
계좌번호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2천만원이상인 경우 별도"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 | 신고서 작성완료

Ⅱ. 원천세 신고 및 납부

Step 1. 세금신고 | Step 2. 신고내역 | Step 3. 삭제내역

메뉴펼침 메뉴접기

- 01. 기본정보 입력
- 0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 03. 신고서부표
- 04. 환급신청서부표
- 05. 신고서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신고서 제출

▪ 지금까지 입력한 자료의 세액계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액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최종제출 됩니다.**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

귀속년월	2019-02	지급년월	2019-02
제출년월	2019-03	신고구분	정기신고
원천징수의무구분	매월	환급신청여부	여
소득세 납부세액	0 원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	0 원
차월이월 환급세액	529,130 원	환급 신청액	529,130 원

환급계좌정보

은행	농협은행
계좌정보	

이전 | 신고서 제출하기

≡ QUICK

- 로그아웃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브라우저 환경설정
- 접기

Ⅲ. 지급명세서 제출

Ⅲ.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구 분	제 출 시 기
근로 · 퇴직 · 사업소득 · 종교인 · 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 사업 등) 지급명세서

Ⅲ. 지급명세서 제출

2. 지급명세서 수정

-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 수정신고 ·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를 결정세액에 가산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란?

0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02

사업소득 (수입금액x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03

기타소득 (소득금액x20%)

일시적 ·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강사료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금액(대가)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대가)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대가)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대가)	학원의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간이세액표 이용)

월 급여액 :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부양가족수 : 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제외		공제대상 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 시 5,630원, 120% 선택 시 8,440원을 원천징수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
3단계	(–) 소득공제	①인적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6%~42%)
6단계	(–) 세액공제	①근로소득 · 자녀 · 연금계좌 ②특별세액공제
7단계	결정세액	
8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은 부양가족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최저사용금액기준,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한도계산시 적용

법조문	주요비과세 항목	포함여부
소법 §12 3호 다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X
소법 §12 3호 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X
	『국가공무원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X
소법 §12 3호 아	비과세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11)	○
소법 §12 3호 자	소득령§12 3호(일직료·숙직료 등)	X
	소득령§12 3호(자가운전보조금)	X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
	소득령§12 15호(벽지수당)	○
소법 §12 3호 거	소득령§16①1호(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법 §12 3호 너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X
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야간수당 등	○
소법 §12 3호 러	비과세 식사대(10만원 이하)	X
	현물급식	X
소법 §12 3호 머	출산,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관련 비과세급여(월 10만원 이내)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포상금	대회 입상자 포상금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 2010-375, 원천세과-436)
	업무유공 포상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		
	민원응대 우수 포상		
	세입징수 포상		
	소송수행자(승소) 포상		
	아이디어·우수제안 시상		
	과태료 징수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적용	소법 §12 5호 다목 소령 §18 ①항 10호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여비	각종 견학·시찰·연수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에 해당하나, 실비변상 정도 금액인지 여부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사실 판단 사항임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해외 출장비 지급		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호 소법 기본통칙 27-55…23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수당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소법 §12 3호 머목
	산불진화 출동 수당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비과세 수당에는 미열거)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소법 §12 3호
	파견자 인사교류 수당		
	기타수당 (발표·심사·당직수당)	실비변상 정도의 당직수당은 비과세이나, 발표·심사 수당은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서일46011-10136) 소령 §12 3호(비과세)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검토	관련근거
식사대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나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과세	소법 §12 3호 러목 소령 §17조의 2
	휴일근무·비상근무 급량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량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특근급량비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검토	관련근거
활동지원금	동아리·행사 지원	예산 지침상 복리후생비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7-598
	휴양시설이용료· 항공료·연수비	업무관련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연수비, 항공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양시설이용료는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법제처 해석 10-453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주택 임차료 지원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주택임차료 지원)하는 경우 과세제외	소령 §38 ①항 6호 단서
	기타 격려금·지원금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분류	지출 항목	과세대상 여부	관련근거
기타	퇴직·근속자 포상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법규소득2010-375, 원천세과-436)
	예산 성과금		
	출산격려금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과 합해 월 10만원 이내)	소법 §12 3호 머목
	건강검진비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필요	소법 §20 소령 §38 ①항 3호
	내부행사경품·격려금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각종 경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단순 격려금은 과세대상	법제처 해석 10-453
	행사경비 지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행사경비는 과세대상 아님	법제처 해석 10-453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공무원의 포상금 등)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단체 포상금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팀·단체로 지급**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원천징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로서
그 성과 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공제한도 계산시 적용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가. 기본공제

구분		나이요건 (장애인 제외)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사실혼x)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미만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가. 기본공제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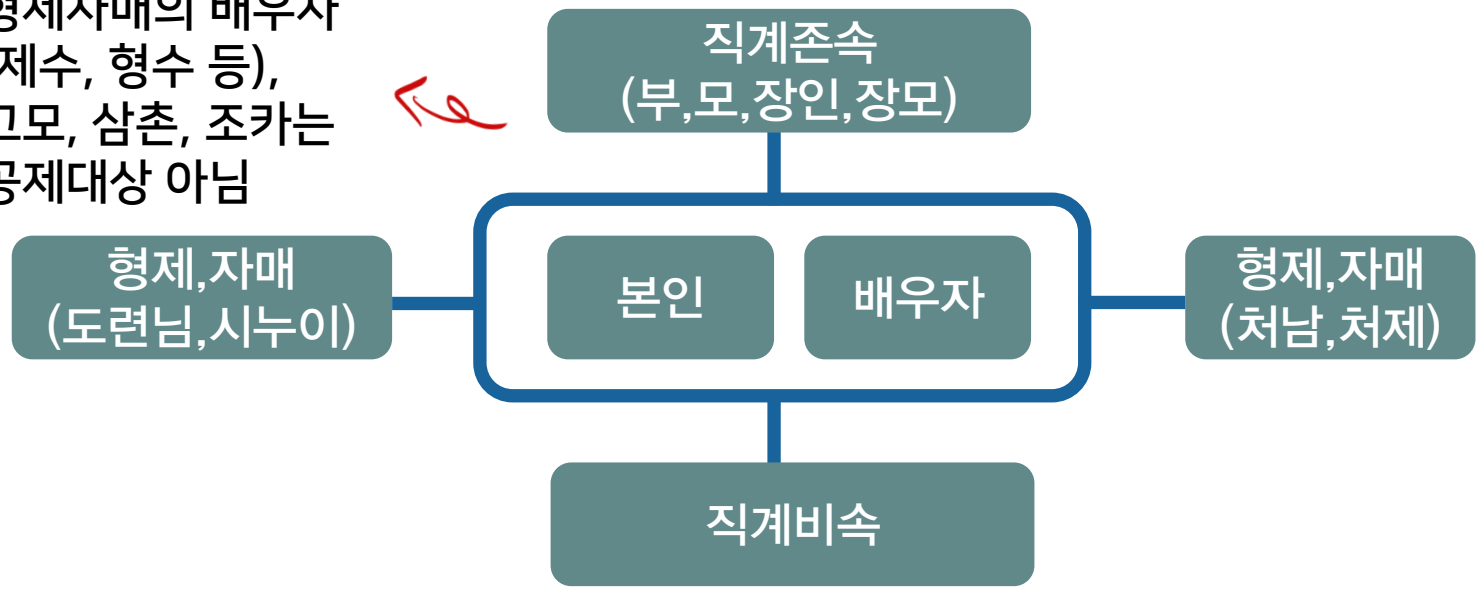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 형수 등),
고모, 삼촌, 조카는
공제대상 아님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Ⅰ 나. 추가공제 Ⅰ

구분	공 제 금 액(20년 귀속 기준)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950.12.31.이전출생) 연100만원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50만원
	④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100만원 (③에도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 우선적용)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부담 분은 공제대상 아님
-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납입액의 경우, 세액공제로 전환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료	전액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연240만원	① + ②연300만원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300만원	
③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이자상환액의 100%	연 300~ 1,800만원	① + ② + ③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분할상환 :1,800 - 고정금리 or 비거치 분할상환:1,500 - 기타 : 500 **[상환기간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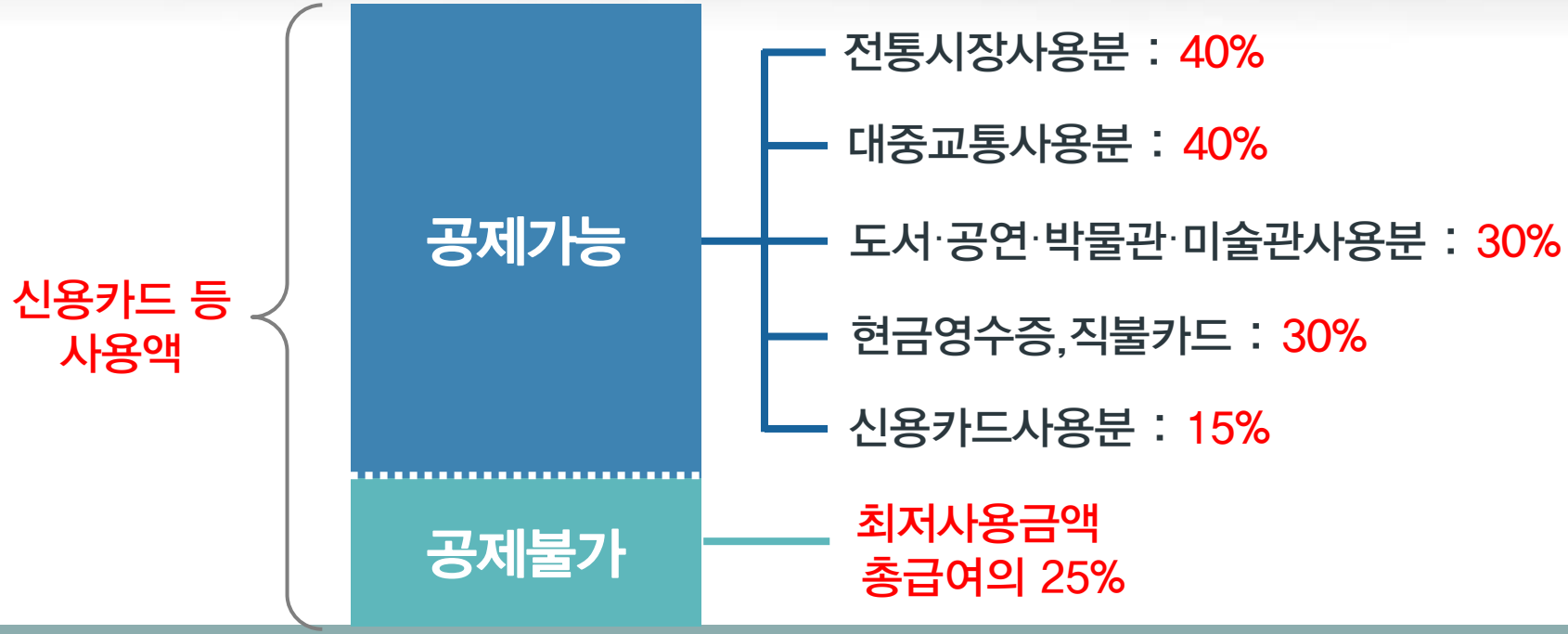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19년 귀속 기준)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총 급여액	공 제 한 도
7천만원 이하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만, 한도초과 시 추가한도 : Min[한도초과금액, ①+②+③]
① 전통시장사용금액의 40%(100만원 한도),
② 대중교통이용금액의 40%(100만원 한도),
③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지출 금액의 30%(100만원 한도)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예 제 | 총급여액 4,000원(신용카드 등 사용액 2,400만원인 경우)

구 분		소득공제액
전통시장사용분	200 만원	80 만원 (40%)
대중교통이용분	200 만원	80 만원 (40%)
도서 · 공연 · 미술관 등	100 만원	30 만원 (30%)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400 만원	120 만원 (30%)
신용카드사용분	500 만원	75 만원 (15%)

총급여 x 25% = 1천만원

385 만원

①기본공제: 300만원
②추가공제:
min[85만원,190만원]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절세팁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총급여 25%)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 공연비 사용으로 한도 up!
-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아라 (나이제한 x, 형제자매 사용분 x)
- 기본공제는 아버님이 받고, 어머님 신용카드공제만 받을 수는 없다.
-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는 신용카드로 결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4.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개정내용 |

구 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30%	80%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60%		30%
	③ 현금영수증	30%	60%		3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60%		30%
	⑤ 전통시장	40%	80%		40%
	⑥ 대중교통	40%	80%		40%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소득공제

- 소득에서 차감
- 적용세율에 따라 공제효과 차이
  "고소득자" 에게 유리
  ex) 6%? 42%

VERSUS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
- 지출액의 12% ~ 15% 수준 공제
  "저소득자" 에게 유리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3,300만원)x0.008] →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x1/2] → 50만원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구 분	공제금액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7세 이상)	·자녀2명 이하:15만원/명 ·자녀2명 초과 1인당 : 30만원	[사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금액 =

[퇴직연금납입액 + 연금저축납입액*] x 12% (15%**)

통합한도 : 700만원(총급여 1.2억원 이하인 50세 이상 900만원)

* 연금저축한도 :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자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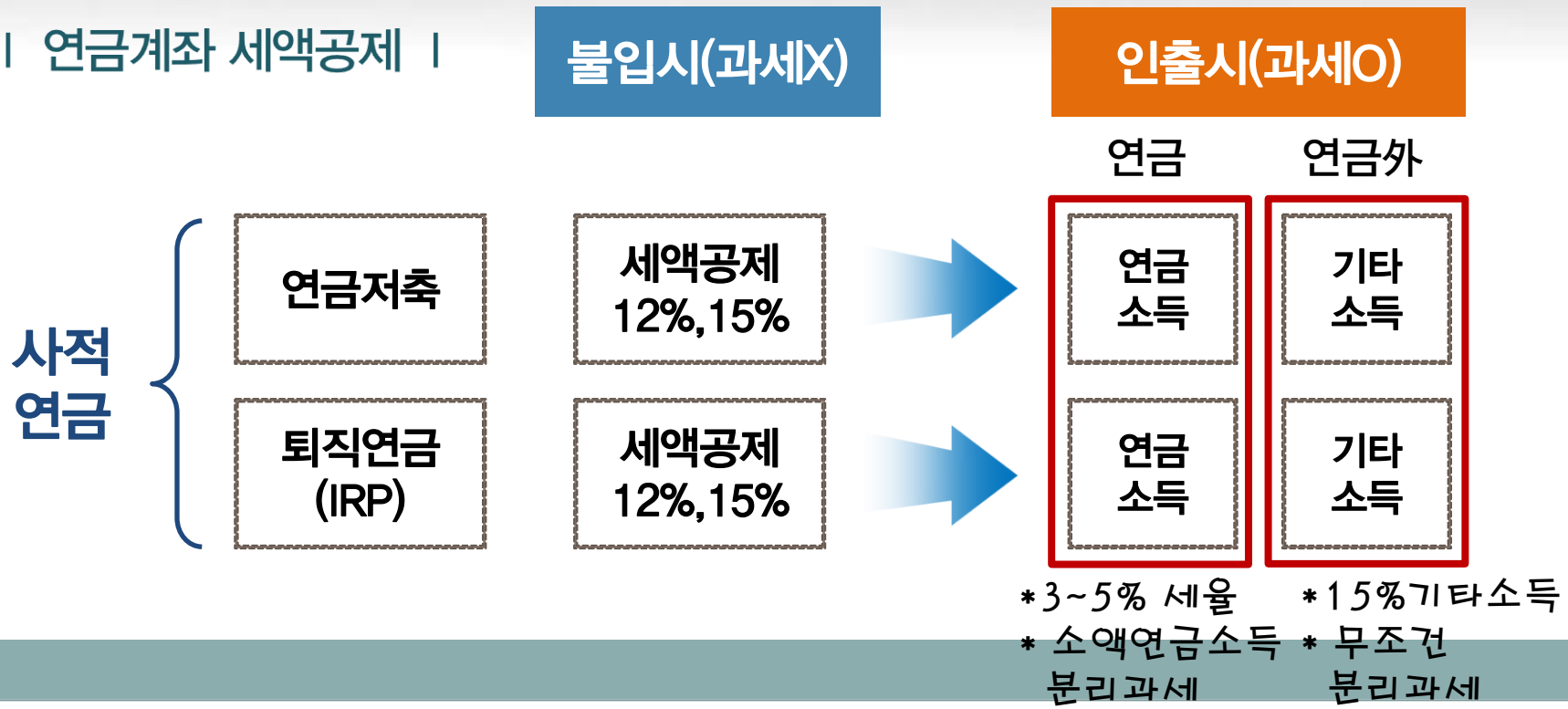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적용방법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과세기간 중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 특례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임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

구 분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서비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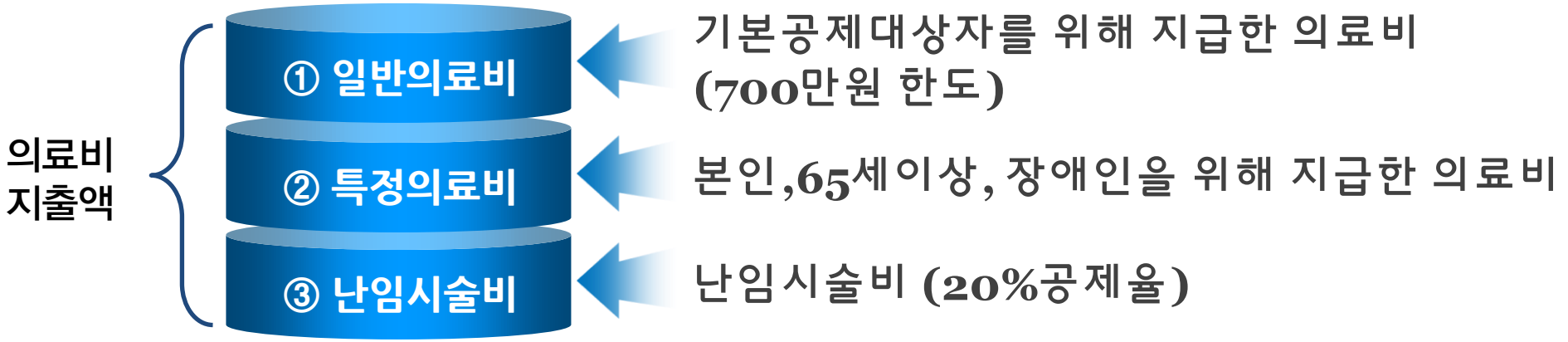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금액 = (① + ②) x 15% + ③ x 20%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임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제한도가 없음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 유의사항 |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 간병인 지급 비용
- ➢ 참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공제 가능(2019년 귀속 개정사항)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

세액공제액 = (①일반교육비 + ②장애인특수교육비) x 15%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장애인 제외)교육비는 공제 불가

구 분		공제한도액	
		본인	가족1명당
일반교육비	대학원생	전액	제외
	대학생	전액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전액	연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전액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

기부금 종류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100%	• 10만원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 x 100%	• 한도내기부금액 x15% (1천만원 초과분 3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①-②) x 30%	
④ 지정기부금(종교O)	(근로소득금액-①-②-③)x10%	
⑤ 지정기부금(종교X)	(근로소득금액-①-②-③)x30%	

* 10년간 이월공제가능,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Ⅳ. 근로소득 원천징수

01 총급여액
02 근로소득금액
03 (-)소득공제
04 산출세액
05 (-)세액공제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5. 월세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공제 금액 = 지급월세액(750만원 한도) x 공제율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10% (종소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 (종소 4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 주소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등 지급증빙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함

강의료



〈판단〉

고용관계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판단〉

회사사보 게재 → 근로소득

프리랜서 → 사업소득

일시,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비과세(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제12조 5호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금과 부상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법규소득 2010-375** (2011.02.18.)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 전 · 후 지급받는 금액 합계액 및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는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

【예시】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 연간 총 9백만원 (6.30퇴직 전 3백만원 수령)

1.1. ~ 6.30. 수령 : 3백만원 ☞ 비과세

7.1. ~ 12.31. 수령 : 6백만원 ☞ 2백만원 비과세

4백만원 과세(기타소득)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제필요경비율 축소

구 분	의제필요경비율		
	~'18.3월	'18.4월~	'19.1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주택입주지체상금	80%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로 받는 금품	80%	70%	60%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지역권 설정 및 대여소득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금품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방법

기타 소득

원천징수 제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

원천징수 대상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
- 종교인소득 지급 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Ⅴ.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예시】 ’20.4월 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125,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풀이】 기타소득금액 : 125,000원 – 75,000원(60% 필요경비) = 50,000원
원천징수세액 : 없음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1.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
2. 저술가 ·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1.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 인적용역 중 접대부, 댄서 및 유사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로 원천징수)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1.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음)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

사례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예시】 A보험모집인에게 2020.5월 사업소득 5,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풀이】 150,000원 = 5,000,000원 x 3/100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대상자*로서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자로서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

1.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원　　3. 음료배달원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x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 소득률 = (1−단순경비율),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사례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예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2019년 귀속 단순경비율 : 기본율 77.6%, 초과율 68.6%)

【풀이】 10,530천원 = {40,000천원 x (1−77.6%) + 5,000천원 x (1−68.6%)}

Ⅵ. 사업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연말정산 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감사합니다



국세청 원천세과